

**4단계 BK21
융합표준전문인력 교육연구단
자체 운영규정**

2021. 02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4단계 BK21 사업
융합표준전문인력 교육연구단

융합표준전문인력 교육연구단 자체 운영규정

2021.02.01.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15조에 의거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4단계 BK21 사업 융합표준전문인력 교육연구단』 (이하 “교육연구단”이라 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에 따른 사업목표의 달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구분 및 기간) ①본 사업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중 혁신인재양성사업 유형이다.

②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7년으로 하고, 그 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③연차별 사업기간은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단 1차년도의 경우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로 하며 마지막 차년도는 2027년 3월 1일부터 2027년 8월 말까지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본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대학원생에게 적용한다.

②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1.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2.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
3.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4.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5.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규정

제2장 교육연구단의 운영 및 구성

제 4조 (교육연구단 구성) 교육연구단은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의 기준 요건에 준하여 교육연구단장,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지원대학원생, 행정직원으로 구성한다(교육연구단 구성원은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 5조 (교육연구단장의 권한과 책임) ① 교육연구단장은 사업의 총괄책임자로서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4.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5. 사업수행을 위한 인사 및 예산 집행 권한

② 교육연구단장의 자격, 대리, 교체 등은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 6조 (조직의 구성) 본 교육연구단의 구성은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및 행정직원으로 이루어지며, 사업의 효율적인 기획과 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와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 7조 (운영위원회) ①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단장 및 참여교수 최소 2인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육연구단 운영 규정에 없는 사항 및 기타 세부사항은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시 교육연구단장의 결의로 최종 의결한다.

1. 교육연구단 수행에 관한 중요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연구단 지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연구단의 자체운영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참여교수 변경 및 증가에 관한 사항
5. 교수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사항
6. 참여대학원생 및 지원대학원생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7. 참여대학원생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사항
8. 장단기 해외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9. 신진연구인력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기타 교육연구단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 8조 (자체평가위원회) ①교육연구단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교육연구단 운영을 위하여 교육연구단 내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자체평가위원회는 교육연구단장의 추천에 의한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연구단장이 되며,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자체평가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요 협약사항의 이행상황에 대한 자체평가
2. 평가결과 분석을 통한 교육연구단 운영 개선

제3장 대학원생 지원

제9조 (정의 및 자격) ① “참여대학원생”은 4단계 BK21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전일제 대학원생으로서, 본인 명의로 4대 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② 학위과정 수료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생 등록이 된 경우에만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을 갖는다. 다만, 각호의 기간을 기산할 때는 재학기간 중 휴학 및 군복무기간은 제외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3.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③ 참여대학원생은 학내·외 주·야간을 불문하고 주당 6시간 이내의 강의를 허용하며 교육연구단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의 70% 이내에서 선발하여 연구장학금 수혜를 받는 대학원생을 말한다.

⑤ 학위과정 수료자는 지원대학원생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

⑥ 지원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관련 연구 및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⑦ 외국인 학생의 경우, 연구과제 참여, 학술문헌 번역 등 구체적인 과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예정인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지원대학원생으로 선정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학생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도 지원대학원생으로 선정될 수 있다.

제10조 (지원대학원생의 선발 기준 및 절차) ① 각 참여교수는 제9조를 충족하는 자 중에서 지원대학원생을 추천한다.

② 제1항의 추천을 받은 자는 소정의 지원대학원생 참여지원서와 연구계획서, 직전학기 성적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제출된 연구계획서와 이전 학기 연구실적을 기준으로 운영위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한다. 단, 석사 1학기 또는 박사 1학기 지원자는 학부 및 석사 성적을 기준으로 평가 및 선정한다.
- ④ 외국인 학생의 경우 제9조 7항의 증빙사실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국제학술교류 지원대학원생 선발은 각 참여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중에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선발하되, 그 최종 권한은 교육연구단장이 갖는다.
- ⑥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별첨 1]의 내용을 참고한다.
- ⑦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선발되며, 장학금 지원기간 중 참여대학원생 자격이 상실될 경우 지급된 장학금에 대해서는 일할 정산하여 환수된다.

제11조 (의무) ①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관련 연구 및 수업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참여대학원생들은 연구 활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연구 활동은 논문게재, 표준문서 작성, 학회 발표, 산학프로젝트 등 BK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한 광의의 활동을 말한다.
- ③ 참여대학원생들은 오리엔테이션을 비롯한 교육연구단의 각종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며, 참여도는 지원학생 선발 시 반영한다.
- ④ 지원대학원생은 각 연도에 해당되는 국내·외 학술지 및 학회 발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별첨 2] 참조).

제12조 (지원내용) ① 참여대학원생과 지원대학원생은 국내·외 학술지 게재지원 및 발표지원을 받을 수 있다([별첨 3] 참조).

- ② 지원대학원생으로 선발된 대학원생에게 국고지원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연구장학금으로 지급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월 70만 원 이상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월 130만 원 이상
 3.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수료생: 월 100만 원 이상
- ③ 참여 및 지원대학원생이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교육연구단 자체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3조 (논문게재 지원시기 및 지원신청) ① 해당 학회지 논문 발간일이 지원 일을 기준으로 사업기간 내(1년 단위)에 신청하는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 단, 기간경과 후에 지원을 신청한 때에는 지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② 지원논문 게재료 및 심사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증빙자료는 학술지명과 주저자가 확인 가능한 별쇄본의 일부 또는 학술지 표지 및 목차 등의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1. 학술지 논문 게재료 지원신청서 1부.
 2. 송금영수증 원본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 원본 및 학회발급 영수증 원본 각 1부.
 3. 논문증빙자료 1부.
 4. 고유번호증 (비영리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14조 (수행결과에 대한 처리) 수행 결과가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제8조의 의무이행이 현저히 미비한 지원대학원생은 다음 장학생 선발시 반영되며, 지도교수 의견 및 4단계 BK21 사업 운영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교육연구단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

제4장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제15조 (참여교수 증가) ① “참여교수 증가”는 교육연구단 소속의 기존 참여교수 이외에 새로운 교수가 교육연구단에 참여하여 교육연구단의 전체 참여교수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참여교수 증가는 다음의 한국연구재단 기준을 만족하는 참여교수 중에서 교육연구단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1. 신규임용교원

a. 정의 : 신규임용교원이라 함은 4단계 BK21사업 신규 참여일자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규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b. 자격 조건 : 4단계 BK21 사업 공고상의 참여교수 자격요건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 기존 전임교원 : 4단계 BK21 사업 공고상의 참여교수 자격요건 기준을 만족하고 교육연구단 소속 전체 참여교수의 최근 3년간의 평균 연구실적을 상회해야 한다.

③ 참여교수 추가 승인 후 증가된 참여교수의 전체 수는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참여교수 교체) ① “참여교수 교체”는 교육연구단 소속의 기존 참여교수가 연구년, 이직, 퇴직,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교육연구단에서 탈퇴하고 새로운 교수가 탈퇴 교수를 대신하여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것으로 교육연구단 전체 참여교수의 수는 변함이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참여교수의 경쟁유도를 위하여 연구실적에 따라 기존 참여교수와 미참여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

② 참여교수 교체는 기존의 참여교수가 탈퇴하였을 경우, 한국연구재단 기준을 만족하는 참여교수 중에서 운영위의 회의를 통해 선발한다.

③ 기존 참여교수가 교육연구단에서 탈퇴한 경우 또는 참여교수의 지도학생이 아니나 교육연구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대학원생의 경우 고려대학교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참여교수를 공동지도교수로 신청하여 교육연구단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장 참여교수 성과급

제17조 (목적) 본 규정은 교육연구단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촉진하고 참여교수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성과급을 지원함에 있어서 그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 (대상자금) 본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성과급의 재원은 필요시 국고지원금으로 예산 배정하여 지급 한다.

제19조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① 성과급은 본 규정의 [별첨1] 「참여교수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근거하여 지급한다.

② 국고지원금에서는 1인당 연 100만원 범위 내에서만 지급한다.

제20조 (기타) ① 매년 사업을 마감하기 전 국고에서 편성된 성과급 예산이 남는 경우, 지난 1년간 연구실적을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 및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에 근거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때, [별첨1] 「참여교수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근거하여 지급한다.

② 교육연구단 운영에의 기여 및 국제학술회의 활동 등 기타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본 규정에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6장 신진연구인력 활용 지침

제21조 (구성) 신진연구인력은 박사후과정생과 계약교수로 구성한다.

제22조 (임용절차) 신진연구인력 선발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위에서 지원서류를 검토하여 선발한다.

제23조 (계약기간) 국고지원금 지원을 받는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하며 계약 횟수에 관계없이 최대 계약기간을 4년 이내로 한다. 박사후과정생 중 ‘리서치 펠로우’로 채용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최대 4년은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 (의무) 신진연구인력은 소속 교육연구단 내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업성과 극대화의 의무가 있다. 운영위는 신진연구인력의 교육연구단 기여도(논문, 학회발표 실적)와 학과 기여도에 따라 재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25조 (시간강의) ① 박사후 과정생 : 박사후 과정생은 교육연구단의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장의 승인 하에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주 6시간 이내의 강의를 할 수 있다. 주 6시간 이내 강의의 ‘시간’은 출강시간을 의미하며 사이버 강의, 평생교육원 강의도 포함된다.
② 계약교수 : 계약교수는 교육연구단의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장의 승인 하에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주 6시간 이내의 교외 시간강의를 할 수 있다. 주 6시간 이내 강의의 ‘시간’은 출강시간을 의미하며 사이버 강의, 평생교육원 강의도 포함된다.

제26조 (계약금액 및 성과급) ① 계약금액은 학술진흥재단 기준(박사후 과정, 계약교수 월 300만원 이상)을 기본으로 학술실적에 따라 결정한다.

② 연구의욕 고취를 위해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논문성과급, 계약금액 조정, 여비지원 등)

제7장 교육연구단 행정업무 전담직원 및 비전일제 직원 활용 지침

제27조 (구성) 교육연구단 행정업무 전담직원은 교육연구단에서 직접 고용하는 전일제 전담직원(4대보험 및 퇴직금 포함) 또는 교육연구단 예산 규모에 맞도록 대학소속 직원이 교내 업무와 겸무 할 수 있는 비전일제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28조 (임용절차) 교육연구단 행정업무 전담직원 선발 시 교육연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세종캠퍼스 채용절차에 따라 운영위에서 선발한다.

제29조 (임용기간) 교육연구단 행정업무 전담직원 및 비전일제 직원의 계약기간은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4단계 BK21 사업의 전체 기간으로 정한다.

제30조 (인건비 및 성과급) ① 행정업무 전담직원 인건비는 교육연구단의 사업비와 업무량에 따라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또한 대학소속 직원이 비전일제로 겸무하는 경우, “세종캠퍼스 교직원 수당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교육연구단 운영비 한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육연구단 업무 의욕 고취를 위해 행정전담 직원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매년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등)

제8장 장단기 해외 연수에 관한 지침

제31조 (해외연수실시)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실적 개선을 위하여 장단기 해외연수를 실시한다. 이때 해외연수학생의 선정이나 금액 및 참가는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결정하며 해외연수는 장기해외연수와 단기해외연수로 구분한다.

① 장기해외연수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장기해외연수 과정 운영 목적 : 교육연구단은 참여대학원생의 연구활동의 범위를 국제적 기준으로 넓혀 연구실적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장기해외연수 과정을 운영한다.
 2. 장기해외연수 대학원생 선발기준 : 교육연구단은 참여대학원생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위원회의 연구 및 교육성과, 어학실력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장기해외연수에 적합한 대학원생을 선발한다.
 3. 장기해외연수 지급기준
 - a. 항공료, 교육훈련비, 국외체제비 및 의료보험료의 항목으로 지급한다.
 - b. 항공료는 실비로 지급하며, 교육훈련비, 국외체제비 및 의료보험료는 지급기준이하의 금액을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한다.
 4. 위탁기관 선정기준
 - a. 위탁기관은 대학원생과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운영회의에서 확정한다.
 - b. 이때 위탁기관은 대학원생의 전공 실력 배양 및 미래 연구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도교수와 대학원생이 상의하여 결정한다.
 5. 연수 준비 및 결과보고서
 - a. 해외장기 연수에 참여한 학생은 해외연수를 마친 후 2개월 이내에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 b. 해외장기 연수에 참여한 학생은 연수기관의 책임자가 발행하는 연수이수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를 연수 마친 후 제출한다.
- ② 단기해외연수는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결정한다.

제32조 (국제학술회의 발표) ①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국제학술회의는 교육연구단장이 대학원생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분야: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20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학술회의 참가 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생의 경우 발표별 논문 저자 중 3인 이내 또는 지정토론자(단, 권위있는 국제 전시회 출품은 국제학회 참가와 동일한 기준 적용)
 2. 교수의 경우 제1호 학생과 동행하는 지도교수(학생이 발표논문의 저자로서 참여하는 경우 지원 가능)
 3.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
 4. 단순참가의 경우에는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산학협력전담인력 포함) 총 3인 이내 가능

부 칙

1. 이 규정은 사업의 시작 일인 2020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별첨 1] 참여교수 인센티브 지급 기준

① 참여교수 인센티브는 하기의 총 9개 항목 기여도 평가에 관한 세칙에 따라 참여교수의 상대평가를 통해 지급한다.

1. 참여교수 논문실적 : 참여교수별 권, 호, 페이지가 부여된 출판 혹은 출판예정인 SCI(E)급논문의 환산보정 Impact Factor를 합산한 후 팀 전체의 환산보정 Impact Factor 총 합으로 나누어 기여도를 평가한다.
 2. 참여학생 논문실적 : 참여교수가 지도하고 있는 참여교수별 학생 및 신진연구인력의 권, 호, 페이지가 부여된 출판 혹은 출판예정인 SCI(E)급 논문의 환산보정 Impact Factor를 합산 한 후 팀 전체의 환산보정 Impact Factor 총 합으로 나누어 기여도를 평가한다.
 3. 참여학생 학술대회 발표실적 : 참여교수가 지도하고 있는 참여교수별 학생 및 신진연구인력의 국제, 국내 학술대회 발표실적을 국제는 2점, 국내는 1점의 가중치에 총 저자수 대비 발표학생 수를 곱한 환산건수를 구한 후, 팀 전체의 환산건수 총 합으로 나누어 기여도를 평가한다.
 4. 참여교수 특허등록 실적 : 참여교수별 등록번호가 부여된 특허에 한하며 국제는 2점, 국내는 1점의 가중치에 총 발명인 대비 발명인 중 참여교수 수를 곱한 환산건수를 구한 후, 팀 전체의 환산건수 총 합으로 나누어 기여도를 평가한다.
 5. 참여교수 기술이전 실적 : 참여교수별 기술료 수입액 중 교육연구단 참여교수의 지분액을 합산하고 팀 전체의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지분액 총 합으로 나누어 기여도를 평가한다.
 6. 참여교수 정부연구비 수주 실적 : 참여교수별 정부연구비 수주액 중 교육연구단 참여교수의 지분액을 합산하고 팀 전체의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지분액 총 합으로 나누어 기여도를 평가한다.
 7. 참여교수 기업체연구비 수주 실적 : 참여교수별 기업체연구비 수주액 중 교육연구단 참여교수의 지분액을 합산하고 팀 전체의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지분액 총 합으로 나누어 기여도를 평가한다.
 8. 외국어 강의비율 실적 : 참여교수별 외국어 강의 학점을 합산하고, 팀 전체의 외국어 강의 학점의 총 합으로 나누어 기여도를 평가한다.
 9. 학위논문 외국어 작성비율 실적 : 가. 참여교수별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한 수를 합산하고, 팀전체 학생들의 학위논문 외국어 작성 수의 총 합으로 나누어 기여도를 평가한다.
- 나. 상기 항목 중 동일한 항목에 참여교수가 2인 이상 기여하였을 경우 세부항목별 점수는 참여교수의 수로 나누어 환산에 적용한다.
- 다. 기 사용된 실적은 차년도 인센티브 산정 시 재사용될 수 없다

[별첨 2] 지원대학원생 선발 규정

4단계 BK21 장학생 선발은 다음의 기준으로 한다.

1. 각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중 신청 또는 추천을 받는다.
2. 추천받은 학생 중 선발 순위는 다음과 같다.
 - a. 참여교수 당 박사과정생 1인
 - b. 타 장학금(국가 및 교내외)의 중복 수혜를 받지 않는 추천된 박사과정생
 - c. 2학기 이상 재학하고, 타 장학금의 수혜를 받지 않는 석사과정생
3. 위의 기준에 의해 선발한 학생의 수가 예산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해 우선 선발한다.
 - a. 박사과정생 중 연구실적이 있는 학생
 - b. 석사과정생 중 연구실적이 있는 학생
 - c. 박사과정생 중 연구실적은 없으나 장학금 중복수혜율이 낮은 학생
 - d. 석사과정생 중 연구실적은 없으나 장학금 중복수혜율이 낮은 학생
4. 추천받은 인원이 예산의 범위를 미달할 시
 - a. 박사과정생 중 연구실적은 없으나 장학금 중복수혜율이 낮은 학생
 - b. 참여교수별 기여도와 참여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그 점수가 높은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별첨 3] 참여대학원생 연구목표

4단계 BK21의 참여대학원생은 졸업 전까지 표준문서 1편 이상 또는 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1편 이상의 게재를 한다. 그리고 국내외 학술발표 2회 이상(등재지 이상 1편 이상의 게재로 대체 가능)을 한다. 단, 지도교수의 판단하에 목표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별첨 4] 참여 대학원생 학술지 및 학술대회 발표지원 규정**1. 연구지원****가. 표준문서**

- 1) 표준문서 작성 완료 시 지원금을 지급하되, 지급은 개인이 아닌 해당 사업팀(지도교수별)별로 한다.
- 2) 지원금은 국제표준 200만원, 국내표준 및 단체표준은 50만원으로 한다.

나. 국내 전문학술지 및 기타국제학술지

- 1) 연구재단 등재지이상인 국내전문학술지와 기타국제학술지(Scopus)에 게재 시에만 지원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주저자여부에 관계없이 심사료 및 게재료 합계 50만원 한도 내에서 논문참여자 수 중 BK대학원생(지원 및 단순참여) 인원 수에 따라 지급한다(BK참여인원수/총저자수 만큼 지급). 단, 연구비지원을 받은 경우 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 국제 전문학술지 논문게재 지원

- 1) 국제 전문학술지(SSCI, SCIE, A& HCI급 등)에 게재한 논문은 1편당 100만원씩 지급하되, 지급은 개인이 아닌 해당 사업팀(지도교수별)별로 한다.
- 2) 국제 전문학술지 게재 목적을 위해 영문으로 논문 작성 시에는 원고에 대한 교정료를 지급한다.
 - 단, 총액 50만원 내에서 지급함.
 - 1개월 이내 투고 확인증 제출해야 함.

라. 사업팀(지도교수별)에 대한 지원금의 연간 최대 한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학술대회 참가 및 발표지원**가. 국제 학술대회 발표자**

- 1) 1회에 한하여 예산 한도 내에서 지급하되 항공비와 등록비를 지원한다. 단, 연구재단에서 규정한 국제학술대회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학술대회만 지원한다.
- 2) 주저자 또는 발표자에게 지원한다.
- 3) 국제학술대회 발표 2개월 전에 교육연구단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시 출장비 청구관련 양식을 포함하여 a)국제학술대회 지원신청서 b)국제학술대회발표 증명서(승인서신)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학술발표가 종료 된 후에는 a)해당 프로시딩 표지 사본, 발표제목과 b)발표자 이름이 있는 목차 페이지 사본, c)발표내용 (해당 프로시딩에 있는 초록, 전문) 사본, 발표내용이 프로시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PPT 등 발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d)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 증빙 (참가국 4개국이상, 발표논문 20건 이상, 외국인 발표논문 50% 이상 만족여부), e)경과보고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